교수업적평가규정

제정 1997. 05. 22.
제21차 개정 2019. 06.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업적에 따른 승진(정년보장) 임용·재임용, 성과급 지급 및 포상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시행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7.6.1)

제2조(평가대상) ① 교수업적평가대상은 본교에 재직하는 모든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명예교수, 객원교수, 외래교수 등의 비전임 교원도 필요에 따라 업적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영역은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7.2.26)

제3조(평가영역 및 주기) ① 교수업적평가 영역은 교육, 연구, 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한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진료영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7.1.11)
② 평가주기는 연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규임용 교원의 업적평가 단위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재임용 및 승진(정년보장)임용의 경우 3월1일 및 4월1일 임용대상자는 전년 12월 31일까지, 9월1일 및 10월1일 임용대상자는 동년 6월30까지로 한다. (항 신설 2008.6.30) (개정 2017.6.1)

제2장 교수업적평가 주관부서 및 위원회

제4조(주관부서)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무연구팀에서 주관한다. 단, 교육영역평가 항목 중 강의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학사기획팀에서 담당하며 한의과대학 임상교원 진료영역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부속한방병원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11., 2018.09.12)
② 각 행정부서 및 부속한방병원의 장은 교수업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연구처에 송부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7.1.11., 2019.06.25)

제5조(위원회) ① 삭제 (2007.12.3)
② 삭제 (2007.12.3)
③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학생행복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처장이 된다. (개정 2007.2.26., 2007.12.3., 2019.06.25)
④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항목 신설, 변경 및 업적평가 결과 활용 등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교수업적평가 기준표의 기준점수를 2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 2008.6.30)

제6조(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결정을 받은 전임교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과 부총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제3장 교수업적 평가 방법

제7조 삭제 (2007.2.26)

제8조(평가방법) ① 교수업적평가 최종점수는 현재의 직급 또는 임용기간 동안의 각 영역별 업적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낸다. (개정 2007.12.3)

② 해당년도 평가 중 한 학기만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각 영역별 점수를 1/2로 나누어 적용한다. (항 신설 2007.12.3)

③ 본 규정 (별표5, 6, 7)의 저명학술지 점수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의 업적평가 단위기간과 상관없이 재임용은 2월말·8월말까지,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은 3월말·9월말까지 게재된 저명학술지를 추가점수로 인정한다. (항 신설 2008.6.30) (개정 2017.6.1)

④ 전적대학 경력인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기승진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한다. (항 신설 2008.6.30)

제8조의2(대학 및 계열구분) ① 업적평가의 항목 및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계열)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양대학, 평화안보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개정 2009.5.29., 2018.09.12)
2. 경상대학,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3. 생명과학대학 (개정 2017.6.1)
4. 이공과대학(이학),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제외), 한의과대학(한의예과) (개정 2017.6.1)
5. 이공과대학(공학)
6. 예술체육대학(예능)
7. 예술체육대학(체육)
8. (개정 2017.1.11.) 삭제 (2017.6.1)
9. 한의과대학(한의학과) (신설 2017.1.11.)
10. (신설 2017.6.1.) 삭제(2018.09.12)

② 학과의 학문적 특성상 제1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계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 신설 2008.6.30)

제9조(평가의 예외 인정) ① 교무위원은 재임 중 (업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본인이 신청 할 경우 평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3., 2007.2.26)

1. 교무위원에 재임중인 자: 업적평가 주기(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있어 보직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업적평가를 면제한다.
2. 교무위원을 면한 자
   가. 업적평가 주기(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내에 있어 보직을 면한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만 해당연도의 업적평가를 면제한다. (개정 2007.2.26)
   나. 삭제 (2007.2.26)

② 연구년 또는 연수자의 업적평가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업적평가를 제외하며, 병가자의 경우에는 병가로 인한 수업결손이 해당 학기의 50% 이상일 경우 해당 연도의 업적평가를 제외한다. 단, 본인이 신청한 때에는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7.2.26., 2009.5.29., 2017.12.12.)

③ 교무위원 이외의 보직교원에 대한 평가 예외 인정 법위는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평가 제외자들도 평가에 따른 자료는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6)

제10조(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교육영역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00.1.13., 2007.2.26., 2007.12.3., 2016.03.03., 2017.6.1)

제11조(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①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별표2)에 의한다. (개정 2007.2.26., 2007.12.3)

②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은 (별표2)의 연구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에 의한다. (개정 2000.1.13. 2016.01.21)

1. 삭제 (2016.01.21)
2. 삭제 (2016.01.21)
3. 삭제 (2016.01.21)
4. 삭제 (2016.01.21)
5. 삭제 (2016.01.21)
6. 삭제 (2016.01.21)
7. 삭제 (2016.01.21)
8. 삭제 (2016.01.21)

③ 예능계 교원의 논문외 연구실적 환산은 연구실적인정환산기준(별표 2-2)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다만, (별표 2-2)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08.6.30)

제12조(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봉사영역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별표3)에 의한다. (개정 2000.1.13., 2007.2.26., 2019.01.09)

제12조의1(진료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임상교원 진료영역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별표 3-1)에 의한다. (신설 2017.1.11) (개정 2017.6.1)

제4장 교수업적 평가 절차

제13조(업적인정 및 평가자료의 입력) ① 평가 대상이 되는 교원은 해당년도의 업적을 교수업적평가시스템에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12월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7.12.3) (개정 2009.5.29)

②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업적은 다음년도 업적평가 때 확인하여 해당년도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처리된 인사, 포상 등의 결정사항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항 신설 2007.12.3)

③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발행(발간)예정인 업적은 예정증명서로 미리 평가할 수 있으나, 해당 년도말까지 반드시 결과물을 시스템에 등록(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시스템에 등록(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이미 처리된 인사, 포상 등은 당연 무효처리 한다. (항 신설 2007.12.3)

④ 동일한 내용의 각종 연구업적은 중복평가 하지 아니하며,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7.12.3)

(조 개정 2007.2.26, 2007.12.3)

제14조 (개정 2007.2.26) (조 삭제 2007.12.3)

제15조(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본 규정 제5조 4항 및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교원이 제출한 업적평가자료를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제5장 이의신청과 활용

제16조(이의신청) ①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별표 4)를 작성하여 결과통보(발송기준) 후 7일 이내에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재심사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업적평가의 활용) ① 본 규정에 의한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본 대학 교원의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평정, 재임용 평정, 연구년 시행, 성과급 지급 및 포상 수여에 적용한다. (개정 2007.2.26, 2008.6.30, 2017.6.1)

② 성과급 지급 및 포상 수여는 해당연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및 징계처분자는 제외하며, 교원의 품위유지, 대학의 명예실추 및 대학발전의 기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포상 수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2008.3.31, 2008.6.30)

③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에 대한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 적용은 재임용은 별표5, 승진(정년보장)임용은 별표6, 교수에서 정년보장임용은 별표7에 의한다. (항 신설 2008.6.30) (개정 2017.6.1., 2018.09.12)

제18조(추가제출) 삭제 (2009.5.29)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교수업적평가 점수에 의한 승진 및 기간제 임용 1998년도 4월 1일이후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2. 1998년 4월 1일 이전 승진자의 교수업적 평가자료는 각 연도성과급 지급 및 포상, 해당 교원의 승진 및 기간제 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 제11조 및 평정표에 대한 경과 초지)이 규정 제9조, 제11조 및 평정표는 1999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92, 2007.2.26)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11조(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1항, 제12조(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의 규정은 2007년 업적평가시부터 적용한다.
③ (업적평가 활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업적평가의 활용)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평정, 기간제임용 평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하되 2004년 이후 교수업적평가결과부터 활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307, 2007.12.4)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11조(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1항의 규정은 2007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38, 2008.4.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업적평가의 활용) 제2항은 2007년 교수업적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84, 2008.7.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2009년도부터 기간제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8년도 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기획예산과-192, 2007.2.26) 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09년도 교수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한하여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 2009.1.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01월 0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의 (별표1) 교육영역 평정표(교육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 (별표3) 봉사영역 평정표(봉사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에 대하여는 2008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교수업적평가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평가기준표의 ( ) 괄호 안의 저명학술지점수는 2007년도 이전까지는 가중치점수가 아닌 인정환산율로 적용하여 인정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8, 2009.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02월0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 비정년트랙교원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78, 2009.5.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적용은 2009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84, 2012.2.8)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6, 2016.01.21)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49,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 2017.1.13)
이 규정은 2017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53, 2017.6.13)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15, 2017.12.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 연구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는 2018년 1월 1일 게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80, 2018.09.12)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2, 2019.01.09)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7.2.26, 2007.12.3, 2009.1.6, 2016.03.03, 2017.1.11, 2017.6.1)

교육영역평정표

구분	항목	업적내용	항목번호	가중치	취득가능점수(년)	배점 (학기 기준)
수업 (1.10)	수업담당시수	학점부여 과목 (일반교원)	1.11		145점	- 학기당 50점
		학점부여과목 (임상교원)			50점	- 학기당 50점
		계절학기 수업	1.12	5	20점	- 계절학기 한 과목당 5점
		e-러닝 강좌 개설		5	20점	- 1강좌당 5점
		야간수업	1.13	2		- 1시간당 2점 (학부수업만 인정)
	강의평가	강의평가	1.14	100	200점	- 1, 2학기 합산점수(원점수) 반영
	강좌규모	수강 학생수	1.15	5 8	25점	- 대단위 1강좌(100명 200명 미만) - 5점 - 대단위 1강좌 200명 이상 - 8점
	휴보강	휴보강 이행여부	1.16			휴·보강계획서 미제출 시, 또는 휴·보강 실시 이후 7일 이내 보강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해당 교과목당 5점씩 감점
	출결관리	출결관리 이행여부	1.17			주기적인 출결관리 시스템 미입력 경우, 해당 교과목당 5점씩 감점
	성적평가	성적 정정여부	1.18			성적 정정시 해당건(명)당 1점씩 감점하며, 학기당 5점으로 제한
지도 (1.20)	학부 학생지도	학생지도 시간 충실도	1.21		20점	- 학생지도 시간(인성교육) 충실도(학사관리과 협조)
		학생 지도 및 상담	1.22	25 20 5	50점	- 학생취업 및 현장 활동 - 직전년도 학과평균 취업률(실적에 따라 점수 배분) - 동아리 지도교수
		공모전 이상의 지도 업적	1.23	10	20점	- 전국규모 이상의 공모전 (대한체육회, 프로그램개발전, 창작활동 등)공식대회(경기)에서 입상한 경우 지도업적 인정 - 지역대회 규모대회 → 가중치×0.5 - 국제 규모 대회 → 가중치×1.5
기타 (1.30)	제출기일 준수여부	수업계획서	1.32	10	20점	- 배점기준 : 학기별 1차 기한 내에 제출 10점, 미제출 0점
		성적평가	1.33	10	20점	- 배점기준 : 학기별 1차 기한 내에 제출 10점, 미제출 0점
	석·박사 논문지도 (심사) 실적	논문 지도 실적	1.34		15점	- 석사과정 : 1인 2점, 1인 추가당 1점 - 박사과정 : 1인 4점, 1인 추가당 2점
		논문 심사 실적	1.35		5점	- 석사과정 : 1인 1점, 1인 추가당 0.5점 - 박사과정 : 1인 2점, 1인 추가당 1점

▶ 교육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

<table>
<tr><th>업적내용</th><th></th><th colspan="2">인정범위 및 가중치</th></tr>
<tr><td rowspan="5">1.11
(학점부여 과목)</td><td rowspan="3">일반교원</td><td rowspan="2">책임시수</td><td>년 책임시수 18시간(학부수업만 인정) 이상 강의 시</td><td>- 학기당 9시간 강의 : 50점
- 19~36시간 : 시간당 2.5점 가점, 최고 점수 145점
- 대학원 수업 연 3시간 책임시수로 인정(단, 책임시수 미달시)</td></tr>
<tr><td>년 책임시수 18시간(학부수업만 인정) 미만 강의 시</td><td>- 학기당 9시간미만 50점에서 시간당 2.5점 감점</td></tr>
<tr><td colspan="2">- 계절학기 수업
- 야간 수업
- e-러닝 강좌 개설
- 수강 학생수</td><td>- 과목당 5점 가점
- 시간당 2점 가점
- 1강좌당 5점 가점 - 최대 20점
- 대단위 1강좌(100명 200명 미만) - 5점
- 대단위 1강좌 200명 이상 - 8점</td></tr>
<tr><td rowspan="2">임상교원</td><td colspan="2">년 책임시수 10시간(학부수업만 인정) 이상 강의 시</td><td>- 책임시수 강의 : 50점
- 책임시수 이상 강의시 : 가점 없음
- 대학원 수업 연 3시간 책임시수로 인정(단, 책임시수 미달시)</td></tr>
<tr><td colspan="2">년 책임시수 10시간(학부수업만 인정) 미만 강의 시</td><td>- 책임시수 미달시 : 시간당 2.5점 감점
50점에서 시간당 2.5점 감점</td></tr>
<tr><td></td><td colspan="2">Team Teaching 과목</td><td>본인이 실시한 수업시간만 인정</td></tr>
<tr><td colspan="2">1.21
(학생지도 시간 충실도)</td><td colspan="3">- 학생지도 시간 충실도 : 인성교육 충실도(학사관리과 협조)</td></tr>
<tr><td colspan="2">1.22
(학생지도 및 상담)</td><td colspan="3">- 학생취업 및 현장 활동 : 기본점수 25점 부여
- 직전년도 학과평균 취업률
: 20점(90~100%), 15점(80~89%), 10점(70~79%), 5점(69%이하)
- 동아리 지도교수 : 1학기당 2.5점 가점(학생지원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아리)</td></tr>
<tr><td colspan="2">석·박사 논문지도(심사) 실적</td><td colspan="3">- 우리 대학만 인정함 (타 대학 제외)</td></tr>
<tr><td colspan="5">수업관리규정에 의거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아 연간 책임시간이 18시간 이내로 된 보직교원 등 신설학과 교수는 학기당 9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본다.</td></tr>
<tr><td colspan="5">신·구교육과정 등 부득이하게 연간 책임시간(18시간)을 강의하지 못하는 교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학기당 9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정 여부는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td></tr>
</table>

(별표 2) (개정 2007.2.26, 2007.12.3, 2008.6.30, 2009.5.29. 2016.01.21. 2017.12.12.)

연구영역 평정표

구 분	항목 번호	업 적 내 용		가중치	제한 점수
저서 (2.10)	2.11	국제학술저서		250	무제한
	2.12	국내 전문서적		150	무제한
	2.13	강의용교재, 번역서		100	200
	2.14	실습용 교재·부교재 및 편저서		50	100
	2.15	기타		20	40
논문 및 특허 (2.20)	2.21	국제 저명학술지(A&HCI, SSCI, SCI, SCI-E)		1≦impact factor : 300점 1>impact factor : 200점	무제한
		국제 특허 (등록만 인정)		200점	
	2.22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20	무제한
		국내 특허 (등록만 인정)			
	2.23	국외전문학술지 (국외 전문 학회지)		100	200
		국외일반학술지 (외국 대학 및 연구소 발간학술지)		80	160
	2.2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0	무제한
		국내 전문학술지		40	80
	2.25	특허 및 신기술	국내특허출원시	20	40
			국제특허출원시	40	80
			실용신안출원시	10	20
			실용신안등록시	40	80
			국내신기술	100	200
			해외신기술	150	300
	2.26	국내 기타 학술지		10	20
	2.27	박사 학위논문		200	
학술활동 (2.30)	2.31	국제 학술회의 Proceeding 논문		50	100
	2.32	국제 학술회의 주제발표・초청강연		30	60
	2.33	국제 학술회의 사회 및 토론		20	40
	2.34	학회주관 국내 학술회의 Proceeding 논문		25	50
		학회주관 이외의 교내・외 학술회의 Proceeding논문		15	30
	2.35	학회주관 국내 학술회의주제발표·초청강연		15	30
		학회주관 이외의 교내・외 학술회의 주제발표・초청강연		10	20
	2.36	학회주관 국내 학술회의 사회 및 토론		10	20
		학회주관 이외의 교내・외 학술회의 사회 및 토론		5	10
연구활동 (2.40)	2.41	연구비 수혜 총액 (작품, 연구활동)			200
	2.42	연구계약 수주건수 (해외)		30	90
	2.43	연구계약 수주건수 (국내, 교외)		10	20
	2.44	연구계약 수주건수 (교내)		5	10
연구보고서 (2.50)	2.51	정부기관 연구보고서		40	80
	2.52	외부 연구보고서		20	40
	2.53	대학 연구보고서		10	20

구 분	항목 번호	업 적 내 용		가 중 치	제한 점수
국전 및 국전규모	2.61	추천, 초대작가(디자이너) 출품		150	2회
	2.62	공모전 최고상		200	
	2.63	공모전 특선 이상		120	
국제전	2.64	회원전및기획전, 추천,초대작가(디자이너) 출품		120	2회
	2.65	공모전 최고상		150	
	2.66	공모전 특선 이상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전	2.67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전 출품		100	무제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학회전 출품		70	무제한
전국규모 단체전	2.68	회원전 및 기획전, 추천, 초대작가(디자이너) 출품		100	2회
	2.69	공모전 입상 이상		80	
지방자치단체 지원 단체전	2.70	회원전, 추천, 초대작가(디자이너) 출품	국제전	70	2회
	2.71		국내전	50	
교수작품전	2.72	교수연구작품 단체전 출품		50	2회
일반 단체전	2.73	동문(동호인)전, 기타초대전		30	2회
개 인 전	2.74	국제전		120	2회
		국내전		100	2회
심사위원	2.75	국전규모 및 공인된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100	2회
	2.76	공인된 국내공모전(전국시.도) 심사위원		50	2회
체능계열 (2.80)	2.81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1회		100	무제한
	2.82	국제 공인 심판자격		100	무제한
	2.83	국내 공인 심판자격 (전국규모 대회)		50	100
	2.84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00	무제한

▶ 연구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

업 적 내 용		인정범위 및 가중치
저서 (2.10)	저서에 대한 인정환산율	- 1/n로 하며, n은 참여 저자수로 총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2.12 (국내 전문서적)	- 전문적 항목을 심도 있게 저술한 서적
	2.13 (강의용 교재, 번역서)	- 강의자료를 그대로 제본한 것이 아닌 정식 출판사의 ISBN을 득한 정식의 강의용 교재로서 일반적인 개론 형태의 강좌에 사용하는 서적 - 외국의 전공분야 학술저서를 번역한 저서 - 국내 전공분야 학술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저서 - 국내 전문서적 및 강의용 교재에 대한 구분은 교수업적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2.14 (실습용 교재・부교재 및 편저서)	- ISBN을 부여받은 전공과목교과서 포함 - 중・고교 교과서 : 최초 출판에 한하여 인정함(개정판→불인정) - 여러 사람의 논문 또는 전공 관련 문예창작물 등을 묶어 편집한 출판물
	2.15(기타)	- 인정범위는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논문 및 특허 (2.20)	논문 인정범위 및 인정환산율	-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회지 및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 2/(n+1), 공동저자 : 1/(n+1)로 하며, n은 참여 저자수로 총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2.21(국제 저명학술지)	- A&HCI, SSCI, 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각 학술지 Impact Factor를 가중치에 적용하여 점수에 반영함
	2.22, 2.24 한국연구재단(후보지 포함) 등재지	- 한국연구재단(후보지 포함)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
	2.21(국제특허) 2.22(국내특허)	- 특허는 등록(공개)시만 인정함(출원 인정 제외함)
	2.23 (국외전문학술지),(국외일반학술지)	- 국외 전문학술지 :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국외전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하되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국외 일반학술지 : 외국의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발간된 학술지로 하되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24(국내 전문학술지)	- 전국규모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되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25(국내기타 학술지)	- 국내 전문학술지외의 학회지, 대학(부설연구소) 및 기업체연구소에서 발행한 학술지로 하되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학술 활동 (2.30)	인정환산율	- 논문과 동일한 인정환산율을 적용함
	Proceeding 논문과 주제발표의 구분	- 주제발표 :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하고 요약문만 있는 것 - Proceeding논문 :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한 후 책자로 Proceeding Paper(주제발표 논문집)가 나온 것 - Proceeding 논문과 주제발표는 중복하여 인정 아니함
	2.34, 2.35, 2.36 교내 학술행사(연구소, 교수 주관)	연 1회만 인정함

<table>
<tr><th colspan="3">업 적 내 용</th><th>인정범위 및 가중치</th></tr>
<tr><td rowspan="4">연구활동
(2.40)</td><td rowspan="4">2.41
(연구비 수혜총액)</td><td rowspan="3">배점</td><td>- 인문사회 : 300만원 → 10점에서 300만원당 10점 추가 인정되며 최고 200점이 상한 점수 (1-299만원은 5점)</td></tr>
<tr><td>- 이학・예체능·한의 : 600만원 → 10점에서 600만원당 10점 추가 인정되며 최고 200점이 상한점수(1-599만원은 5점)</td></tr>
<tr><td>- 공학 : 900만원 → 10점에서 900만원당 10점 추가 인정되며 최고 200점이 상한점수임 (1-899만원은 5점)</td></tr>
<tr><td>교외
연구비</td><td>- 인정환산율 : 공동·책임연구자를 구분하여 논문과 동일한 인정환산율을 적용함.
- 수혜금액 : 당해 평가기간내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교외에 연구책임자가 있어 실제로 수혜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총 계약개월수)×인정환산율×해당년도 개월수]로 처리함.</td></tr>
<tr><td>교내
연구비</td><td>- 인정환산율: 책임·공동연구자를 구분하지 않고 1/N로 적용
- 수혜금액 : 당해 평가기간내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함.</td></tr>
<tr><td rowspan="2">연구활동
(2.40)</td><td rowspan="2">연구계약 수주
건수</td><td>교외
연구</td><td>- 교외연구 : 공동연구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연구자만 인정함.(계약기간 기준)</td></tr>
<tr><td>교내
연구</td><td>- 교내연구 : 책임·공동연구자 구분하지 않고 1/N로 인정</td></tr>
<tr><td colspan="3">연구보고서(2.50)</td><td>- 논문과 동일한 인정환산율 적용하며, 최종보고서만 인정함
- 상지대학교 자체예비평가연구보고서 및 상지한방병원 연구과제 보고서는 대학 연구보고서로 인정함.</td></tr>
<tr><td colspan="3">예능계열 별도 인정 항목</td><td>- 교원인사규정 [별표2]에 명시된 예능계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기준을 준용함.</td></tr>
<tr><td colspan="3">공인된 개인전</td><td>- 해당 증빙서류 및 카다로그, 포트폴리오, 슬라이드 첨부와 신작만 인정</td></tr>
<tr><td colspan="3">단체전(사단법인), 단체전시회</td><td>- 카다로그, 증빙서류 첨부와 신작만 인정</td></tr>
<tr><td colspan="3">심사위원</td><td>- 해당 단체 및 기관 증빙서류 첨부시 인정
- 심사위원장 : 가중치×1.5</td></tr>
<tr><td colspan="3">2.83(국내 공인 심판 자격)</td><td>-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공식경기</td></tr>
<tr><td colspan="4">저서, 논문, 연구보고서는 발간 시점 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연구실적은 논문내용, 논문집표지, 목차, 발행년월일, 저자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td></tr>
</table>

(별표 2-2) (신설 2008. 06. 30)

【예능계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기준】

전시구분 (교육법전 심사평정 기준)	전시 유형	연구실적 인정 내용		적용점수
- 국제전 ※ 3개국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개국의 경우 전국규모전에 적용함	국제 (국외일반)	초대작가, 추천작가전 1회		120
		공모전	최고상 1회	150
			특선이상 1회	100
		심사위원		100
- 대한민국미술대전 - 대한민국공예대전(이상 구 국전)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구 상공전)	전국	초대작가, 추천작가전 1회		150
		공모전	최고상 1회	200
			특선이상 1회	120
		심사위원		100
- 공인된 개인전	국외	개인(단독) 1회		120
	국내	개인(단독) 1회		100
- 전국규모전 및 초대전	전국	초대작가, 추천작가전 1회		100
		교내교수작품전시회 1회		50

【예능계 전람회 현황 및 분류표】

전시구분	주최 및 주관	전 시 명 칭	전시 종목	주최 특징	비 고
• 국제전(국외일반) (3개국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개국의 경우 전국에 적응함)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대한민국 청주시	좌 동	공예종합	청 주	- 국제전(국외일반) * 해당국 정부관련기관 주최 또는 세계규모의 예술 및 공예, 디자인 단체등의 주최 * 공모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전국가대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 대한민국공예대전 (이상 구 국전)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구 상공전)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산업자원부 주최	좌 동	미술종합 공예종합 디자인종합	사단법인 사단법인 정 부	- 국전 * 중앙정부(문광부, 산자부, 건교부, 과기처 등) 및 산하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단체의 주최전 * 대한민국훈격 또는 대통령상상훈의 구성 * 공모의 범위가 전국 또는 전세계 대상
• 개인전	개인단독	개인작품전			- 개인단독작품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다록)
• 전국규모전 및 초대전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좌동(회원전,국제전)		사단법인	- 예능계 법인단체(사단법인)의 주최로서 전국규모전 이상 - 국제전의 초대·추천작가급이 참여하는 기획 초대전 - 예능계 공인단체의 주최로서 전국규모전 이상으로서 아래내용을 동시 충족하는 단체 * 연혁 10년 이상 * 참여인원 80인 이상 (전국규모) * 년1회 이상 국내(국제) 회원전 또는 초대전 개최 - 국제전: 개최지는 국내외를 불문함하며 2개국이상 ※ 공인단체의 충족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카다록 등 증빙서류 첨부
	화경도예가회	좌동(회원전,초대전)			
	한국디자인학회	좌동(회원전,초대전)			
	서울공예대전	좌동(회원전,초대전)			
	한국디자이너협의회	좌동(회원전,초대전, 국제전)		사단법인	
	목우회	좌동(회원전,초대전)		사단법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좌동(회원전,초대전, 국제전)		사단법인	
	한국미술창작협회	좌동(초대전,국제전)			
	한지개발원	좌동(회원전,초대전)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좌동(회원전,초대전, 국제전)		사단법인	
	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좌동(회원전,초대전, 국제전)		사단법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좌동(회원전,국제전)		사단법인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회	좌동(회원전,국제전)		사단법인	
	서울섬유미술제	좌동(회원전,초대전)			
	팡당제4조형회	좌동(회원전,초대전)			
	한국미술협회	좌동(회원전,초대전)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좌동(회원전,초대전)		사단법인	
	한국섬유미술가회	좌동(회원전,초대전)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좌동(회원전,초대전)		사단법인	
	한·일섬유미술교류회	좌동(회원전,초대전, 국제전)			
	한·일한지작가초대작가회	좌동(회원전,초대전, 국제전)			

(별표 3) (개정 2007.2.26, 2009.1.6, 2009.5.29., 2017.1.11., 2019.01.09., 2019.06.25)

봉사영역 평정표

구분	항목번호	업적내용	가중치	취득가능 점수제한		인정범위
교내 봉사 (3.10)	3.11	행정보직(교무위원급)	200	-	200	- 부총장, 대학원장, 학·처장, 학술정보원장, 법인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한방병원장,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특수대학원장
	3.12	행정보직(부처장급)	100	-		- 원장보, 평생교육원장, 평가관리팀장, 교육연수원장, 농업과학교육원장, 어학원장,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장, 취업지원센터장, 기초교육원장, 한방병원 진료부장, 교육부장
	3.13	행정보직 (부속기관장급)	80	-		- 생활관장, 실습목(농)장장, 고시원장, 중앙기기센터장, 보건소장, 신문사주간, 방송국지도교수, 영자신문사지도교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소장, 교육연수원부장, 산학협력단부단장(추진본부장), 창업보육센터장, 체육부장, 농업과학원교육부장, **생활협동조합이사장**, 사회봉사단장
	3.14	행정보직(학과장급)	70	-		- 학과장, 주임교수, 부설연구소장, 교수협의회 운영위원, 산학협력단 소속 분야별 장, **~~한방병원 진료부장, 교육부장~~**
	3.15	각종 위원회 위원장	50	100		- 대학의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 - 임상교원은 한의대 또는 한방병원의 자체평가(인증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에만 100점 인정 - 기타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 가중치 및 취득점수 제한 × 0.5 인정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대학의 중요평가 관련 TFT위원장 및 위원
		기타 교내설치 위원회 위원장	25	50		
		각종 대학평가 관련 위원장 및 위원	100	-		
	3.16	각종 위원회 활동	30	60		- 대학의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 임상교원은 한의대 또는 한방병원 자체평가(인증평가)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만 80점 인정 - 기타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 가중치 및 취득점수 제한 × 0.5 인정 - 각종 위원회 위원(간사) 활동
		기타 교내설치 위원회	15	30		
	3.17	입시 및 취업활동	10	30		- 고등학교 방문 홍보 및 특강 - 취업을 위한 기업체 방문
	3.18	학교발전기금 수주	10	50		- 학교발전기금 출연 및 수주
	3.19	교수회의 및 연수 참가	5	20		- 전체 교수회의 및 교원연수 참가 - 단과대학의 전체교수회의 : 가중 치 및 취득점수 제한 × 0.5 인정
교외 봉사 (3.20)	3.21	학회 활동	50 · 100	100		- 회장 ; 가중치 100점 - 전국규모 학회 임원, 편집위원, 평이사: 가중치 50점 - 지역학회 및 분회활동 → 가중치×0.5
	3.22	정부관련 조직 활동	60·80	80		- 정부 조직 기관장 : 가중치 80점 - 전국규모의 위원회 : 가중치 60점 - 지방 조직 활동 → 가중치×0.5
	3.23	법인단체 활동	20	40		- 사회문화단체, 장학재단,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도단위 이상) 임원 등 :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함
	3.24	언론매체를 통한 학교홍보활동	10	100		- 언론 초청강연 및 특강 - 신문 및 전문지 칼럼·시론

구분	항목번호	업적내용		가중치	취득가능 점수제한		인정범위
		(일반교원)					- 방송출연 - 지방언론매체→가중치×0.5
		언론매체를 통한 학교홍보활동 (임상교원)		20	200		- 언론 초청강연 및 특강 - 신문 및 전문지 칼럼 - 방송출연 - 지방언론매체→가중치×0.5
	3.25	기타		5	40		-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외부작품심사 - 학진 논문심사 - 공공기관 심사(학회심사는 제외) - 교내 및 외부특강(제한점수20점) - 장학금 : 100만원 이상 - 도서기증 : 50권이상 - 의료봉사 : 3일 이상 1건당 20점(제한점수 60점) - 각종 단체 및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 : 3일이상
산(관)학 협력 활동 (3.30)	3.31	기술이전 (건당)	2,000만원미만	30	60	200	
			2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50	100		
			4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70	140		
			7천만원이상	100	200		
	3.32	국책과제 지원시	사업단장	30	60		- 국책과제 지원·수행 시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자이고 참여교수 중 우리대학의 교수가 60%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
			참여교수	10	20		
		국책과제 수행시	사업단장	100	200		
			참여교수	50	100		
			간사교수	70	140		
	3.33	협약체결	주무교수	10	20		- 국가기관, 지방단체, 기업체와 체결한 산학협력
			참여교수	5	10		
수상 및 공훈 (3.40)	3.41	국제단체에서 수여한 상		100	100		
	3.42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상		70	70		- 훈·포장 포함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20	20		
	3.43	학술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50	50		
		학술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15	15		

▶ 봉사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

활동기간 인정	- 봉사영역 항목중 활동기간으로 점수를 인정하는 항목은 활동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 1개월로 인정함. - 활동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배점 방법 : 가중치/12×활동기간(월단위)
교내봉사에서 인정범위 이외의 보직에 대한 인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각종 대학평가 관련 활동	- 위원회 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최종보고서가 완료된 학년도의 실적으로 반영함 - 위원회 활동 도중 위원을 사퇴한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함
3.15 (각종 위원회 위원장)	- 기타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부처 및 단과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상조회 관련 활동 위원회 활동으로 인정함. - 교육연구처, 산학단 주관하의 국책사업(연구과제) 신청활동
3.16 (각종 위원회)	- 기타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각 부처 및 단과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상조회 관련 활동 위원회 활동으로 인정함. - 교육연구처, 산학단 주관하의 국책사업(연구과제) 신청활동
3.18 (학교발전기금 출연 및 수주)	- 학교발전기금 수주 : 100만원 → 10점에서 100만원당 5점 추가로 인정되며 최고 50점이 상한 점수임
3.22(정부관련조직 활동) (지방정부관련조직 활동)	- 위원회 :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활동을 의미하며 위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3.25 기타	- '교내 및 외부특강'에서 평생교육원, 계약제학과, 숲해설가 등 교내에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강의는 제외함
국제학회, 국제기구 및 기관 활동	가중치×1.5로 인정함. (제한점수 초과 인정)
겸직 및 항목별 중복될 경우 그 중 최고점수만 인정한다.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점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봉사영역 실적중 외부봉사 실적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타 대학 및 학회 논문심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20(교외봉사), 3.30(수상 및 공훈) 실적은 원본대조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3.25 기타 : '교내 및 외부특강'에서 평생교육원, 계약제학과, 숲해설가 등 교내에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강의는 제외함	

(별표 3-1) (신설 2017.1.11) (개정 2017.6.1)

임상교원 진료영역 평정표

구 분	항목 번호	업 적 내 용	가중치	제한 점수
진료 (4.10)	4.11	책임 진료시간(주당 28시간) / 학기당 50점	100점(년)	무제한
	4.12	학생 임상실습 지도 / 학기당 15점	30점(년)	30점
	4.13	수련의 지도 / 1명당 10점	10점	40점
	4.14	진료실적	실적에 따라 차등	무제한
	4.16	병원장 평가	30점	30점
가산점 (4.20)	4.21	새로운 검사 또는 치료법 도입 주관	10점/건당	무제한
	4.22	새로운 검사 또는 치료법 도입 참여	10점/건당	무제한

▶ 임상교원 진료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

4.11(책임 진료시간)	- 주당 책임시간 이상 진료시 : 학기당 50점 + (추가시간 × 5점) 주당 책임시간 미만 진료시 : 학기당 50점 - (부족시간 × 5점)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진료시간은 1.5배 인정
4.14(진료실적)	- 당해연도 병원 총 의료수입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 월 평균 6,000만원 이상 : 400점 월 평균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300점 월 평균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200점 월 평균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150점 월 평균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 100점 월 평균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50점 월 평균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0점 월 평균 2,000만원 미만 : -50점
4.16(병원장 평가)	- 근무성실도, 병원발전기여도 등에 대해 병원장이 정성적으로 평가 (수:30점, 우:25점, 미:20점, 양:15점, 가:10점)
가산점(4.20)	- 가산점이 부과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새로운 검사 또는 치료법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최초 도입 또는 수입 증가의 기여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별표 4)

교수업적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이의 신청사유	

. . .

이의 신청인 : (인)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의 신청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신설 2008.6.30.) (개정 2012.2.8, 2016.01.21, 2017.1.11., 2017.6.1. 2017.12.12., 2018.09.12)

【 재임용 평가 기준표 】

직 급	재임용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저명학술지 점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교양대학	생명과학대학	이공과대학(이학) 한의과대학(한의예과)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제외)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이공과대학 (공학)	예술체육대학 (체육)	예술체육대학 (예능)
조교수 (6년)	384 (300)	414 (300)	396 (300)	396 (진료:1,200)	414 (300)	396 (300)	636 (300)
부교수 (6년)	438 (300)	474 (300)	450 (300)	450 (진료:1,500)	474 (300)	450 (300)	798 (300)

1. '재임용 평가 기준표'의 재임용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는 직급별 임용기간 6년간 교수업적평가 3개 영역(교육, 연구, 봉사)의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기간으로 나눈 평균점수이며,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한의과대학(한의학과)의 임상교원은 직급별 임용기간 6년간 교수업적평가 4개영역(교육, 연구, 봉사, 진료) 중 진료영역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기간으로 나눈 평균점수이며,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재임용 평가 기준표'의 재임용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저명학술지 점수)는 6년간 합산한 점수이며,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 연구영역 평정표의 2.21(국제저명 학술지), 2.22(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2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의 가중치점수로서 임용기간 내 해당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한의과대학(한의학과)의 임상교원은 진료영역 점수를 6년간 합산한 점수이며, 해당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3. 한의과대학(한의학과) 임상교원의 재임용 시 진료영역 평가는 2017년 이전에 재임용된 교원이 2017년 진료영역평가가 신설된 이후 최초 재임용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예능계열에서 저명학술지를 대체할 경우 [별표2-2] "예능계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환산기준" 및 "예능계 전람회 현황 및 분류표"에 의거 인정한다.

5. 재임용의 평가기간 적용은 재임용 해당연도 기준(교수업적평가 규정 제3조)으로 하여, 직전 6년간으로 한다.

6. 2016.1.21. 이전에 부교수로 승진 및 재임용된 경우에는 저명학술지 점수를 200점으로 한다.

(별표 6) (신설 2008.6.30), (개정 2012.2.8, 2017.1.11., 2017.6.1., 2018.09.12)

【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평가 기준표 】

직 급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저명학술지 점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교양대학	생명과학대학	이공과대학(이학) 한의과대학(한의예과)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제외)	한의과대학(한의학과)	이공과대학(공학)	예술체육대학(체육)	예술체육대학(예능)
조교수(6년) ⇩ 부교수	640 (600)	690 (700)	660 (700)	660 (진료:1,800)	690 (700)	660 (600)	1,060 (600)
부교수(6년) ⇩ 교수(정년보장)	730 (600)	790 (700)	750 (700)	750 (진료:2,100)	790 (700)	750 (600)	1,330 (600)

1.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평가 기준표'의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는 직급별 임용기간 6년간 교수업적평가 3개영역(교육, 연구, 봉사)의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기간으로 나눈 평균점수이며, 기준점수 이상 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한의과대학(한의학과)의 임상교원은 직급별 임용기간 6년간 교수업적평가 4개영역(교육, 연구, 봉사, 진료)의 점수를 합산 한 후 해당 기간으로 나눈 평균점수 이며,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평가 기준표'의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저명학술지 점수)는 6년간 합산한 점수이며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 연구영역 평정표의 2.21(국제저명 학술지), 2.22(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2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의 가중치점수로서 임용기간내 해당 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한의과대학(한의학과)의 임상교원은 진료영역 점수를 6년간 합산한 점수이며, 해당 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3. 예능계열에서 저명학술지를 대체할 경우 [별표2-2] "예능계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기준" 및 "예능계 전람회 현황 및 분류표"에 의거 인정한다.

4. 한의과대학(한의학과) 임상교원의 승진(정년보장 포함) 시 진료영역 평가는 2017년 이전에 승진한 교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때 평가기간의 일부가 2017년 이전에 포함되면 진료영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규정의 저명학술지 점수(조교수 700점, 부교수 700점)를 적용한다.

5. 승진(정년보장)임용의 평가기간 적용은 승진 해당년도 기준(교수업적평가 규정 제3조)으로 하여 직전 6년간으로 한다.

(별표 7) (신설 2008.6.30) (개정 2017.1.11., 2017.6.1., 2018.09.12)

【 교수의 정년보장임용 평가 기준표 】

직 급	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저명학술지 기준점수(한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진료점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교양대학	생명과학대학	이공과대학(이학) 한의과대학(한의예과)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제외)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이공과대학 (공학)	예술체육대학 (체육)	예술체육대학 (예능)
교수(2년)	200	200	200	진료:700	200	200	200

1. 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저명학술지 기준점수는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 연구영역 평정표의 2.21(국제저명 학술지), 2.22(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2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의 가중치점수로서 임용기간 내 해당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한의과대학(한의학과) 임상교원의 교수의 정년보장임용의 진료영역 평정점수는 2년간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며, 해당 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2. 예능계열에서 저명학술지를 대체할 경우 [별표2-2] “예능계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기준” 및 “예능계 전람회 현황 및 분류표”에 의거 인정한다.

(별표 8) (신설 2009.2.6.) (개정 2012.2.8, 2016.01.21, 2017.6.1)

【 비정년트랙교원 재계약 평가 기준표 】

직 급	비정년트랙교원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저명학술지 점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국제대학	생명과학대학	이공과대학(이학) 한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의료경영학과 제외)	이공과대학 (공학)	예술체육대학 (체육)	예술체육대학 (예능)
조교수	384(100)	414(100)	396(100)	414(100)	396(100)	636(100)
부교수	438(100)	474(100)	450(100)	474(100)	450(100)	798(100)

1. “비정년트랙교원 재계약 평가 기준표”는 직급별 계약기간내 3개영역의 점수를 합산 및 평균하여 1년 단위로 나눈 점수 이며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비정년트랙교원 재계약의 교수업적평가 점수(저명학술지 점수)는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2> 연구영역 평정표의 2.21(국제저명 학술지), 2.22(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2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의 가중치점수로서 계약기간 내 해당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3. 비정년트랙교원 재계약의 예능계열에서 저명학술지를 대체할 경우 [별표2-2]“예능계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환산기준”및 “예능계전람회 현황 및 분류표”에 의거 인정한다.